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裵東守
編輯人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 1051
전화(967) 813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2—5895
967—8133 사무실

'86 제17次 定期總會 3月31日 開催決定

場所:한약빌딩 4층 (協會옆 건물)

協會는 지난 3월11일 86년 제17차 定期總會를 對備한 준비 理事會를 소집한 바 있다.

이날 會議에서 協會大事의 하나인 제17차 定期總會(86년도)開催日字를 오는 3월31일 13시로 決定한바 있다. 따라서 定總에 부의할 여러가지 의제를 놓고 심의한 結果 各各 다음과 같은 正例的인 議案을 통과시켰다.

▲제17차 定總參加대상(代議員자격) ○協會 各任員(理事및監事) ○市·道支部長및 各市·郡·區事務所長 ○各市·道·郡·區 共販場長 ○中央會員資格者로써 定總參加및 權限을 위임받은 者

▲86협회 事業計劃書및 豫算編成案

▲85협회 事業實績및 收·支決算報告書(집행부에 위임처리)

▲協會定款改正案등이였다. 그런데 今般 理事會에서 채택된 今年度 主要事業方針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①地域別로 生藥材 選別計劃生産제도 권장

②可用 벌루네에서 계약재배 試圖또는 備蓄調節로서 價格安定에 寄與

③生藥材 取扱管理에 對한 自體權益보호 措處강구

④系統出荷 啓道로서 유통질서 確立에 寄與

⑤販路開拓및 擴大로서 생산농가 所得增大

⑥수출기능 補完으로 實績增大

⑦우량 種子·種苗·種根의 選別 確保및 供給안선

⑧國內生産으로 需給可能한 輸入억제

⑨과장·과대적인 弘報活動계속 統制

⑩산하조직의 整備조직과 新規擴大에 注力

⑪會員자질 向上을 爲한 수시 敎育强化등을 基本方針으로 內定하였으며 특히 今年度에는 自然生保續事業의 적극적인 啓導와 地域別 副存資源 수집에 대한 敎育및 채취회원 보호에 효율적인 弘報活動을 强化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날 參席한 任員名單

▲理事:朴萬鍾 會長 ▲理事:朴贊永 副會長 ▲理事:鄭尙鈺 專務 ▲理事:李玉鎔 中央공판장장 ▲理事:宋寅兼 江原道支部長 ▲理事:吳寬秀 경기도支部長 ▲理事:李鍾喆 충북도支部長 ▲李和鑾 전북도支部長 ▲理事:朴吉夫 부산시支部長 ▲理事:金東均(제주도지부장)위임 ▲理事:裵命哲(서울)위임 ▲理事:李鍾燁(서울)위임 ▲理事:金正滿(경남도지부장)위임 ▲理事:鄭永埈(대구시지부장)위임 ▲理事:安承官(경북도지부장)위임

85年度 生藥材 輸出實績 종합

그동안 輸出入기관의 요청과 주변여건의 事情으로 月別로 連載하고 있던 生藥材 수출실적 統計表는 지난달부터 中斷하였음으로 별리 諒知하옵시고 必要하신 分이 있으시다면 個別的으로 電話나 書信등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다면 개괄적인 事項은 하시라도 알려드리겠읍니다.

우선 全體的인 昨年度 輸出現況은 金額(미화불)上으로 7、378、635불로서 수출目標 13、500、000불에 대하여 46·5%에 不過하였으며, 主要生藥材를 大別하면 결명자:18、510불, 고삼:70、802불, 구기자:10、194불, 길경:94、999불, 당귀:186、987불, 두충:30、208불, 목단피:10、293불, 목통:20、020불, 박하:12、603불, 백작약:21、624불, 백지:18、456불, 백출:4、359불, 복령:186불, ▲산수유:53、663불, 산약:90、037불, 세신:84、502불, ▲시호:43、735불, 애엽:82、186불, 오미자:58、203불, ▲오배자:514、512불, ▲은행엽:1、768、835불, 의이인:16、454불, 지모:37、012불, 지황:152、896불, 차전자:33、418불, 통草단:20、020불, 패모:73、149불, 해방풍:25、527불, 현호색:128、160불, 황기:155、782불, 활백:24、660불등이였으며 이중 1百萬불以上輸出된 生藥材는 成分이 가장 총다는 시호, 은행엽등이고 5拾萬불以上 수출된 生藥材는 산수유, 오배자등이 占하고 있다.

農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식생활의 지혜——

미역국과 쌀밥

창가 긴의자에 앉아 설레는 가슴을 달래며 초조하게 기다린지 3시간, 시침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고요한 적막의 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아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그날을 기억한다. 오늘 아침내 밥상에 뽀얗게 끓인 미역국에 꽁기밥한 그릇이올라와 있었다. 사랑스런 내 아내가 처음 엄마가 되던 날 먹던 밥상과 똑같았다.

옛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되새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즐겨먹고 있는 미역에 대하여 잠깐 집고 넘어갈까 하여 몇자적어본다. 3면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바다는 식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동물성 식품의 섭취부족을 가장 값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수산물의 공급원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수산물은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발육, 노화방지,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커 식생활에 오는 영양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좋은 식품이며 특히 미역은 요드 섬유질이 많은 식품으로 장에 유익한 세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여러가지 유익한 작용을 도와 정장과 변통을 조절하므로 변비를 막아주는 식품이다. 또한 피부를 곱게해 준다고 해서 다이어트 미용식으로 정평이 나 있는 터이다. 미역은 일반 채소류 보다도 강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미용이나 성인병 예방에 좋을 뿐 아니라 특히 요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산모에게 유익한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역이 양식기술의 발달로 그 자원량이 풍부해 언제 어디서나 싼값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요리법도 개발 보급되어 가정주부가 부담없이 식탁에 올려있을 수 있는 우수식품임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미역을 고르는 요령을 잠깐 알아보면 우선 눈으로 보아 색깔이 암록색을 띠어야 하며 또한 손으로 만졌을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부리지거나 잡아당겨 쉽게 끊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미역의 품질은 열분과 수분의 함량에 따라 서 좌우되기도 하는데 미역을 손으로 잡아 물이배나올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수산물 이용에 못지않게 요사이 서민 물가안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것 같다. 먼저 쌀을 고를때 정부미를 선택하는 것은절소비를 늘리는 것으로써 한 가정에서 매월 5㎏의 정부미를 일반미 대신 소비해 준다면 연간 300만석의 재고 감소효과를 가져와 4、15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끈한 미역국 한그릇에 쌀밥 한그릇 가득담아 배불리 먹고 싶던 시절도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값싸고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선택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계에도 도움을 주는 생활의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미 재고누증으로 자금유통이 어렵게되어 나라 살림에 부담을 가중시킴과 아울러 장기보관으로 인한 쌀의 질만 떨어져 소비자가 정부미를 기피하는 악순환만 초래하게 됨을 알아야할 것 같다.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정부미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써 한 가정에서 매월 5㎏의 정부미를 일반미 대신 소비해 준다면 연간 300만석의 재고 감소효과를 가져와 4、15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끈한 미역국 한그릇에 쌀밥 한그릇 가득담아 배불리 먹고 싶던 시절도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값싸고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선택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계에도 도움을 주는 생활의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京畿·忠南北 5개市 18개郡 31일부터 토지거래 申告制

정부는 충부권개발과 간척사업·농공지구 지정등과관련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議政府·九里·忠州·堤川·大川市등 경기도와 忠南北일대 5개市 18개郡에서 일정면적의 토지를 사고팔때에는 당해지역 시장·군수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토록하는 토지거래신고제를 오는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19일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23개지역 1만21㎢(약4천4백36만평)를 토지거래신고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오는25일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신고제는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오는31일부터 그효력이 발생, 오는 91년 3월24일까지 5년간 실시된다.

토지거래신고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은 3백30㎡(1백평) ▲공업및 준공업지역 1천㎡(3백3평) ▲생산및 자연녹지지역 6백60㎡(2백평)이상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농지5천㎡(1천5백평) ▲임야·초지 1만㎡(3천3백평) ▲기타 1천㎡(3백3평)이상이다.

31일부터 이지역에서 신고 대상면적이상의 토지소유권자 또는 지상권을 사고자는 사람들은 권리의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이 적힌 토지거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의이용에 관한 계획에 맞지않을때에는 계약체결을중지시킬 수 있다.

人事發令

〈任〉

▲경남도 지부장=김정만 86년2월27일부(임명)

〈免〉 경남도 하동군 사무장=이원석 86년3월18일부(해임).

發展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충청북도 지부

도 지부장 이종철
제천시 사무소장 유환
청주시 〃 우명규
진천군 〃 이지욱
괴산군 〃 임재석
영동군 〃 김운호
보은군 〃 황춘환
단양군 〃 장경철
충북도 공판장장 이승백

⊙충청남도 지부

도 지부장 문대규
서산군 사무소장 이영래
예산군 〃 성백덕
당진군 〃 최동진
홍성군 〃 주성철
공주군 〃 이기범
논산군 〃 이재광
금산군 〃 정영석
아산군 〃 윤복영
대전시중구 〃 이상국
청양군 〃 조병섭
부여군 〃 신현진

1986년 3월 15일